

THE SHARP 번영센터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※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■ 특별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

신청대상자	신청일자	방법	장소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	2020.08.20 (목)	인터넷 청약 08:00 ~ 17: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감정원 '청약Home'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앱 '청약홈'

■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

구분	당첨자 및 등·호수 발표	당첨자 서류접수	계약체결
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시 : 2020.08.28.(금) 확인방법 : 한국감정원 '청약Home' (www.applyhome.co.kr) *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조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시 : 2020.09.01.(화) ~ 2020.09.06.(일) [7일간] (10:00 ~ 16:00) 장소 : 당사 견본주택 T:052-260-441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-13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시 : 2020.09.08.(화) ~ 2020.09.10.(목) [3일간] (10:00 ~ 16:00) 장소 : 당사 견본주택 T : 052-260-441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-13
※ 당사홈페이지(http://더샵번영센터로.com)에서 선착순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며, 예약가능 일정은 당첨자 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. ※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.			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용
대상자 및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: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.08.10.(월) 현재 울산광역시·부산광역시·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(만19세 미만)의 자녀 3명 이상 (태아나 입양아를 포함)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요건 :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(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.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「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. -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. -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,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,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제3항) ※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.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됨. ※ 소형·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체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 -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[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269호(2018.05.08.)] 에 따라 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, 나머지 주택(우선공급에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.)은 부산광역시,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”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. - 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”에 따라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미성년 자녀수(태아나 입양아 포함)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※ 울산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, 경상남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, 신청미달이 발생 되는 잔여 물량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. (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) ※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및 관련 법령에 따름.

■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

[단위: 세대]

구분	59A	59B	75A	75B	84	합계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8	2	2	6	10	28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-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[별표1]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미성년 자녀수 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영·유아 자녀수 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영·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세대 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▪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	한부모 가족	5	
무주택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▪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해당 시도 거주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·도로 본다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저축 가입기간 (6)	5	10년 이상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계	100	-	-	다자녀가구 신청자의 배점 = (1)+(2)+(3)+(4)+(5)+(6)
유의 사항				
(1),(2)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 (3)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(4):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 (4),(5)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※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				